



국제환경협약의 이해

3차시

1. 기후대기분야

1.1. 유엔기후변화협약

1) 개요

- 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으로 기후시스템에 위험한 간섭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온실가스 문제는 생산시스템 및 경제시스템의 주요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경제,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침
- ② 협약이 채택되기까지 논의를 통해 국가(Party)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행해야 할 구체적 의무와 협력사항 등을 포함
 - 1988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의 주관 하에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활동으로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짐
 - 1990년 제45차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가 구성되어 여섯 차례의 협상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안 확정
 - 해당 협약안은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어 1994년 상반기부터 발효됨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가입
 - 협약 가입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동의무사항 혹은 일반의무사항과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에 적용되는 특별의무사항을 규정
 - ※ 공동의무사항: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 작성 및 제출, 기후변화 방지에 필요한 국가정책 수립 및 이행,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기후변화 관측체계의 확충,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 관리보호 등의 분야에서 공동 협력, 정책 수립 시 기후변화 문제 반영, 온실가스 통계와 국가정책 이행에 관한 당사국 총회에서의 의무적 보고 등

※ 특별의무사항: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 수립 및 구체적 조치 시행,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경제수단의 활용에 있어 국가 간 조화 모색,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노력 등

- ③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 위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 기상이변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감축과 적응이 기후변화 대응의 양대 축으로 언급됨
- ④ 기후변화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대립 지속
 -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기후변화를 극복하게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감대 형성
 - ※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CBDR-RC)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공동의 책임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 간 상이한 책임과 서로 다른 대응 능력에 기반함을 강조
 - 기후변화 책임문제, 규제대상 및 수준,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상이한 입장 유지
 -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용된 화석연료를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며, 선진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함을 주장

2) 교토의정서

- ①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구체적인 규제기준과 일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이 채택되어, 협약 가입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이행과 특히 선진국(Annex I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규정
 -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에 비준
 -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04년 러시아가 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발효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 ※ 교토의정서 발효요건은 1990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Annex I 국가를 포함하여 55개국 이상이 의정서를 비준 또는 승인할 경우에 성립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아래로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규정한 것으로, 의무 감축 당사국인 39개국의 경우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보다 5.2% 감축하도록 할당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non-Annex I (비부속서 I) 국가로 분류됨으로써 교토의정서에서 의무감축 국가에 해당되지 않음

② 교토 매커니즘(Kyoto Mechanism)은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체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타국의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자국보다 감축 비용이 낮은 나라에 자원 제공 및 투자를 함으로써 그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

-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배출 쿼터를 부여하여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얻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③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음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이 불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가능성 저하
-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상당수 국가들도 의무감축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부정적 결과는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필요성과 다자간 협약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낳음

3) 파리협정

① 파리협정(Paris Agreement)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유일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으로 2015년 12월에 협약의 제21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당사국 간에 합의하였고, 현재 효력 발효 이전 단계임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훨씬 이하로 유지하거나 1.5도씨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을 높이며, 온실가스 저배출 경로와 기후탄력적 개발을 위한 재정을 충당함으로써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파리협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 차지하는 협약의 55개 이상 당사국이 협정을 비준하거나 승인해야 함
- ②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차별화 되는 기후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열의에서 도출되었으며, 몇 가지 특징을 지님
-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되는(applicable to all) 협정의 성격을 가지며, 협약의 원칙인 CDR-RC를 기본으로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모든 당사국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기후체제를 구상
 - 교토의정서에서 각 당사국에 감축의무를 정해서 부과했던 하향식(top-down) 방법을 벗어나, 각 당사국이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여(contribution)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행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주기적 점검(global stocktake)을 통해 기여공약 준수와 지속적인 기여상향(progression)을 유도
 - ※ 교토의정서는 감축의무만 부과하였지만,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기여”가 포괄적 의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여로 감축, 적응, 재정, 기술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의미로 논의
 - 기후변화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정, 기술, 역량배양, 행동과 지원의 투명성에 대한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협정문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를 “적응”과 별개의 조항에서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
- ③ 파리협정은 각 당사국의 의무사항들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국들이 자율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는 체계를 지향
-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등의 사항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정성적인 차원에서 의무사항으로 언급
 - 파리협정에서 각 당사국들의 기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 각 당사국이 5년 주기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이며, 5년 주기로 전 지구적 점검(global stocktake)을 개최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이행 진척사항을 점검하고 정치적 모멘텀을 높이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후체제를 설계

1.2. 비엔나협약

1) 개요

- ① 비엔나협약은 오존층 파괴의 영향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1985년 체결된 보편적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임
 - 유엔환경계획(UNEP)은 본 협약의 채택을 위해 1981년부터 협상 시작
 - 일부 국가에서 방출하는 염화불화탄소와 기타 화학물질이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효율적 규제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필요로 하였음
- ② 비엔나협약의 내용
 - 오존층을 변하게 하는 모든 인간활동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으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국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과
 - 인간활동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환경적 결과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 관찰 및 연구와 정보교환을 하도록 당사국에게 국제협력 의무 부과
 - ※ 국제협력을 위해 구체적으로 오존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화학적 과정, 오존층 변화에서 비롯되는 인류 건강과 기타 생물학적 영향,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물질 기술 등에 대한 연구와 평가에 착수·협력하도록 규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해 당사국이 법률, 과학, 기술 분야에서 정보를 상호교환 하도록 규정
 - 당사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으로 나누어 각 오존파괴 물질별 상이한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비당사국에 대해서는 당사국과의 교역을 제한
- ③ 비엔나협약의 평가

- 이해국가 그룹 간의 갈등으로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상세한 통제조치 마련에 실패했고, 선진국의 입장에 치중한 정보교환규정 등 형식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본래의 의의를 크게 상실한 것으로 평가
- 한편으로 본 협약을 통해 국제공동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점은 큰 성과로 평가
- 오존층 파괴가 인류 건강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협약 범위 내에 포함시켰고, 잠재적 피해 가능성만으로도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방법을 택했다는 점에서 환경법 분야의 주요 선례가 되고 있음

2) 몬트리올 의정서

- ① 비엔나협약과 관련하여 1987년에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비엔나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비준을 동시에 기탁
 - 우리나라는 1994년 이래 개발도상국으로서 의정서에 참여해 왔으며,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유지를 위해 1인당 연간 소비량 기준(CFC와 Halon에 대해 0.3kg)을 준수
 - 1999년부터 우리나라는 감축 일정이 시작되어 CFC의 경우 2005년까지 50%, 2007년까지 85%, 2010년에는 완전 전폐 의무 부과
- ② 몬트리올 의정서의 목표는 오존 파괴물질의 범세계적인 생산 및 소비 감축 내지 궁극적인 폐지를 통해 파괴된 오존층을 회복함으로써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유해 자외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
 - CFC는 자동차, 전기, 전자, 냉동냉장기기, 건축자재 및 기타 단열재 등 우리나라의 수출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련 산업에 어려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여건변화에 상응하여 전 지구적 오존층 보호운동에 적극 참여
 - 의정서 가입 준비과정에서 규제물질에 대한 생산 및 소비를 제한하는 국내 특별법 및 관련 행정조치가 마련됨으로써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의 법적·제도적 장치 시행

- 관련 국내 법률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오존층보호법)’이 있음

2. 생태계분야

2.1. 생물다양성협약

1) 개요

- ①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169개국이 서명하고 1993년 12월에 발효
 -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과 UN 환경계획(UNEP)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기점으로 본격화
 - 생물의 다양성 보전은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유전정보의 보전과 생명공학적 측면, 식량 증산을 위한 기술 진보에도 매우 중요
 -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요소들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의 활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는 생물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며 기술 선진국도 아닌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약에 대해 초기에 방관적이었으나 1994년 협약비준서를 제출
- ②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일반적 조치, 유전자원에의 접근,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 생명공학의 관리와 이익 분배 등을 포함
- ③ 협약에서의 당사국 간 관계
 - 본 협약은 경제개발에 기인한 생물종의 감소 또는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활용과 생명공학 기술 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협력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 생물자원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반면 유전공학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선진국이고, 개발도상국은 유전자원 제공으로 인한 이익 분배와 기술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데 반해 선진국은 개발상품에 대한 적절한 지적재산

권 보호를 주장

- 본 협약은 생물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경향을 지님
- 브라질, 인도, 말레이시아 등 그동안 생물자원을 제공해 온 개발도상국들이 생물종을 사용한 유전공학기술의 결실에 대한 공동소유권을 주장해 온 점에서 국제협력에 있어 다수당사자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음

2) 카르타헤나 의정서

- ①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생물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로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라고도 불리며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의정서이며,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국가 간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과 환경과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짐
 - 2000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03년 9월 11일에 발효됨
 - 우리나라는 2007년에 의정서에 비준하였고, 본 의정서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②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이동과 관련한 사전 통보 합의 절차 설립, 사전예방 접근법, 위해성 평가, 생물 안전성 정보공유체계(clearinghouse)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3) 나고야 의정서

- ①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협약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로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됨
 -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중 하나인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법적 체계
- ②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사용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함으로써

생물다양성협약의 나머지 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유전자원 공급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적인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보다 예측가능한 환경 마련
- 유전자원이 원래의 생산 지역 혹은 국가를 떠나는 경우 이익공유에 대해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줌
-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통지식도 포함

③ 나고야 의정서는 가입 당사국들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무, 이익공유 의무, 준수의무에 관련한 수단을 취하도록 함

- 국내 수준의 접근 수단으로는 법적인 명확성과 투명성 확립, 공정한 규정과 절차, 접근 관련 허가발급,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연구 장려 등이 있음
- 국내 수준의 이익공유 수단으로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대한 공정한 이익분배를 포함하며, 이용방식은 연구개발이나 상업화 등을 포함하고, 공유는 상호 합의에 따라, 이익은 화폐 혹은 비화폐적인 수단 등을 포함
- 준수 의무와 관련해서는 상호합의된 사항에 따라 유전자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수단이나 유전자원이 생산국가를 벗어난 후의 이용을 모니터링 하는 수단 등 마련

2.2. 람사르협약

1) 개요

- ① 람사르협약의 공식명칭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이며, 습지보호를 위해 1971년 2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
- 습지는 홍수와 기후조절 역할을 하며 유기물질을 생산하며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함

- 본 협약은 채택 후 1980년대까지는 활동이 저조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생물다양성의 원천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주요한 협약으로 대두됨
- 람사르 협약은 2016년 현재 169개 국가가 가입하였으며, 습지와 관련 자원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내행동과 국제협력에 대한 체계를 제시

② 협약가입국은 세 가지 의무를 지님

- 모든 습지에 대한 현명한 이용을 위한 노력
- 적합한 습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람사르 목록)으로 지정하고 효과적 관리 시행
- 초국경적 습지, 습지 시스템, 관련 생물종에 관해 국제적으로 협력

2) 우리나라 습지

① 우리나라는 1997년 람사르협약에 가입

-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8년에는 경남 창원에서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②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22곳이 람사르습지로 등록

- 협약 가입시 최소 1개 이상의 국내습지를 협약의 등록습지로 등재해야 하는 협약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연생태계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강원도 인제군 소재 '대암산 용늪'을 협약 등록습지로 등록
-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을 경유하는 철새의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습지보호에 대한 요구 증가
- 1997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창녕의 우포늪을 1998년 3월 협약 습지로 등록하였으며, 1999년 2월에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하는 등 습지보전 및 협약이행 노력에 동참

2.3.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 개요

- ① 워싱턴협약이라고도 불리는 본 협약의 정식명칭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1972년 6월 UN인간환경회의에서 협약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고 1973년 워싱턴에서 채택되었으며, 1975년 발효됨
 - 본 협약은 다양한 형태의 동식물이 현세대 및 후세대에 걸쳐 지구자연계의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도한 개발과 국제무역으로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 야생동식물을 국제협력 하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
- ② 주요 내용으로는 무역규제대상 동식물, 수출입 허가서 및 증명서, 무역제한 면제 및 특별규정,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멸종위기의 정도에 따라 1000여종의 협약대상 야생 동식물을 3개의 부속서에서 분류하고 무역규제 제한을 각각 명시
 - 본 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고 협약을 위반하는 무역을 금지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사국의 의무조치
 - 수출입자의 성명 및 주소, 거래상대국, 거래대상 동식물 등 교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사무국에 보고

2) 우리나라 관련사항

- ① 우리나라는 선진국 및 환경 NGO로부터 전통의약품 등에의 CITES 품목 사용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고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이후 고양된 국내외 환경보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993년 7월에 협약에 가입
- ②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멸종위기 종의 불법 국외반출을 지속적으로 억제하고, CITES 규제대상 동식물 사용 억제와 대체원료 개발에 대한 지원책 등이 요구됨